

# '85 산업보건정책 방향

##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신 석 규

희망이 넘치는 을축년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와 직업병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81년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유지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에서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직업병 예방을 위해 여러가지 시책에 심혈을 기울였는바 최근에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던 산업재해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며 작업환경 개선도 많이 이루어져 근로자 건강보호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더욱 작년 한해에는 산업보건측면에서도 지역권 설정에 따른 특수 건강진단제도가 정착되고 있으며 '84. 7. 1부터는 안전모, 안전대, 방진마스크등의 보호구에 대한 성능검정을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방진마스크 보급에 기여하게 되었고, '84.12.31에는 광산근로자들의 오랜 숙원이던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는등 실로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보건은 작업환경의 개선이나 직업병예방의 기초단계를 지나

쾌적하고 안락한 작업환경조성을 추구하는 선진제국의 산업보건에 비하여 아직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진폐를 비롯한 각종 새로운 직업병의 발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산업의 발달과 함께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다음 몇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산업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에는 각종 직업병에 대한 진단방법 및 인정기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직업병은 진폐증과 소음성난청, 연중독등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99%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진폐를 제외한 다른 직업병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가 극히 드문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 다른 직업병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직업병에 대한 진단방법과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못한데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어 직업병 전반에 대한 인정기준과 진단방법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과

합적인 직업병 발견과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83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검진지역을 일부 조정하여 책임검진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과거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던 때 검진사업장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간의 과당 경쟁 사례나 영세사업장 또는 벽지사업장의 검진누락 사례등의 부실검진 사례를 일소하고 질병자를 조기발견하여 신속한 사후조치를 하며,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역담당제는 일부 의료기관이 영세사업장에 대한 검진을 기피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례도 없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은 검진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검진인원이 과다하여 지역담당제 본연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시행하기 위해 일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역을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일반건강진단의 1,2차 검사항목별 검사방법등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은 집단검진이라는 특성때문에 검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또는 검진의사에 따라 각각 검사방법이 상이할수 있으며, 2차 정밀검진을 과다하게 실시하는 폐단도 없지 않았으므로 당부에서는 1차 및 2차검사 항목별 검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1차검사결과 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2차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화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는, 보건관리자들의 선임기준을 업종별 위해도에 따라 달리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현행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담보건관리자를, 300인이상 사업장은 촉탁 보건관리자를 300인미만 사업장은 촉탁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을 선임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유해부서가 없는 1000인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의 선임 배치를 기피하며, 촉탁 보건관리자의 경우도 사업장내에 상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유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업종별 위해도와 유해부서 종사자수등에 따라 조정하며, 300인이상 사업장도 보건관리업무를 대행케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보건관리자 및 보건담당자의 직무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 보건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지난해 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동법률에는 진폐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작업환경측정과 개선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진폐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작업전환의 권고나 지시 기준과, 채용금지 대상이 되는 진폐이환의 정도, 진폐근로자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이직시 건강진단제도, 진폐근로자에게 생계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장애위로금이나 유족위로금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진폐근로자 보호에 진일보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금년에는 영세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금속 및 유기용제사용 업체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여러가지 시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만 이러한 사업은 사업주의 깊은 이해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보건관계자 여

러분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므로 우리모두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산업보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보건관계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 제 11 차 아세아산업보건학회 안내

제 11 차 아세아산업보건학회가 필리핀, 마니라시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자세한 것은 본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학회 참가신청

일 시 : 1985 년 11 월 10 일 - 15 일 ( 6 일간 )

장 소 : 필리핀, 마니라시, 필리핀 국제 회의 센터

연제제출 : 초록마감 1985 년 7 월 1 일

학 회 비 : 1985 년 7 월 31 일 이전 \$ 200 이후 \$ 220

### 2. 학술상 신청

자 격 : 본협회 회원으로서 35 세 미만인 자

논문제출 : 1985 년 6 월 15 일까지 본협회 필착

상 금 : \$ 1,000

수상장소 : 제 11 차 아세아산업보건학회

### 3. 문의처 : 당협회 사무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반포동 604-1

전화 : 533-4329, 593-0976